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보유의 지속성 분석 -IRP의 실효성 논쟁 중심으로-

임 두 빈\* · 전 용 일\*\*

IRP의 경제적인 유인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받은 후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있어,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임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퇴직급여

논문 접수일: 2014년 10월 15일, 논문 수정일: 2015년 9월 8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23일

\* (제1 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료 (doova@naver.com)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jeon@skku.edu)

## I. 서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직 시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으로 인해 퇴직급여의 중도 소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은퇴 시까지의 퇴직연금의 지속적 적립의 단절을 가져와 근로자의 노후자산 축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퇴직연금 보유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직할 때 그동안 쌓인 퇴직연금적립액을 은퇴 시점까지 계속 유지하는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2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가 도입되어 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계속적으로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 장치가 마련되었다. IRP 제도는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DB)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DC) 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sup>1)</sup>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명시된 퇴직급여의 종류는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등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퇴직금 적용 근로자 및 퇴직연금 적용 근로자는 모두 퇴직할 때 IRP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는 퇴직급여가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되고,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 후 선택적으로 IRP 가입이 가능하다.

IRP는 해지에 따른 추정세가 부과되지 않고, 가입 유지기간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IRP 제도가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퇴직급여를 수령한 후, 원하는 근로자만 개별적으로 개인퇴직계좌(IRA)에 퇴직소득을 적립하던 이전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에 한해 강제로 IRP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원하는 사람만 해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으로써 의도적으로 해지하고자 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노후자금을 유지

---

1) 2017년부터 IRP 가입가능.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RP가 도입된 주목적은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일시금을 현재 직장 또는 미래 직장에서 받을 퇴직급여와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가 중도에 소진되지 않고, 은퇴 후 받을 퇴직연금과 통산하여 노후소득이 적절히 축적되도록 기여하는 것이 IRP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RP의 가입 유지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IRP 계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인센티브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IRP의 경제적인 유인책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IRP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과 동일하게 매우 까다롭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 IRP 계좌를 개설한 근로자 중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즉시 IRP 계좌를 해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IRP 제도 시행 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IRP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유인체계를 보면, IRP는 DB형이나 DC형에 비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한층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퇴직일시금이 IRP에 입금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55세 이상이고, 연금으로 5년 이상 받겠다고 하면 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 10년, 15년, 20년 등으로 확정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등 다양한 방식의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하여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고 중도해지 시 추징세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품 운용이 가능하다.<sup>2)</sup>

한편 과세이연 효과는 IRP의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인데, 퇴직 시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되면서 현재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IRP 계좌로 이전된 퇴직일시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인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래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 후 바로 일시금을 세후 수령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세제 혜택이 더 크다. 또한, 과세이연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IRP에 모아둔 적립금은 최대한 늦게 인출하는 것이 좋다. 한편 IRP는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

2) 박원주·임두빈·전용일(2011), 오진호·임두빈·전용일(2013), 임두빈·전용일(2012), Ttanasio and DeLeire(2002), Papke(1998), Papke(2004), Shankar and Miller(2003) 참조.

되어 과세한다. 이때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해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의 연금소득세를 내고 과세를 종결짓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IRP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납입 한도를 연간 1,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DB형 및 DC형 가입자의 추가 납입금과 연금저축금액을 합산해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유인체계에도 불구하고, IRP가 지속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은퇴 시점까지 IRP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이 실제로 크지 않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노후보장 3층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퇴직연금의 지속성 측면에서, IRP의 역할에 많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IRP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실증적인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한 실제 가입자의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 내부에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IRP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주로 IRP의 도입 전 필요성과 제도설계 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류건식 외(2012)에서는 IRP 제도 시행 전, 잠재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IRP에 관한 인식 및 수요를 분석하였는데, IRP의 필요성 및 가입 의사는 높게 나타나지만, 정부의 홍보나 교육 부족으로 인해 수요자의 IRP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재무적 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립금 수령 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충분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호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IRP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홍보 및 교육시스템 강화, 가입자의 속성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태호(2009)의 경우 IRP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IRP는 가입자의 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립금이 지나치게 투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개인이 운용에 대해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 펀드(default fund)에 투

3) 2015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확대되어,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400만 원)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자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유석(2013)은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세제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간 세 부담의 불공평을 줄이기 위한 소득공제의 조정, 과세방법 적용상의 기준금액 조정, 연령과 수령을 고려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였다. 해외 연구를 보면, Benartzi and Thaler(2001)는 개인의 시간과 관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다 노후소득보장에 취약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생애 주기를 고려한 상품 개발과 투자에 대한 교육에 보다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퇴직급여와 IRP 선택의 경제모형을 이론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정책 실패의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제Ⅲ장에서는 국내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자 자료를 통해 IRP의 실제 작동 현황과 가입자 특성을 파악하고, 제Ⅳ장에서는 연령과 성별, 종사하고 있는 산업, 임금액 등이 IRP 유지와 해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퇴직연금 보유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IRP 제도 보완의 경제적·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 Ⅱ. 퇴직급여와 IRP 선택의 경제모형

본 연구에서는 퇴직급여와 IRP 선택의 경제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소비를 근로 기간과 퇴직 후의 두 기로 가정한다. 분석의 전제로 근로자는 현재소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정부는 근로자의 미래소득 즉, 은퇴 후 노후보장을 강조한다고 가정한다. 근로자는 1기인 근로 기간에 퇴직급여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2기인 퇴직 후 IRP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

즉, 1기의 모형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할 것인가, 퇴직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근로자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선택할 비중을  $\alpha$ 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모형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퇴직급여} = \alpha \cdot \text{퇴직연금} + (1-\alpha) \cdot \text{퇴직금} \quad (1)$$

실제 사업장에서 선택하게 되는  $\alpha$ 의 범위는  $0 \leq \alpha \leq 1$ 이 되며,  $\alpha = 1$ 이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모두 퇴직연금으로 선택되고,  $\alpha = 0$ 이면 근로자 모두 퇴직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2기 퇴직 후 기간의 모형은 IRP 유지에 관한 모형이다. 1기에 퇴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2기에 반드시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IRP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선택이다. 반면, 1기에 퇴직금을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2기의 퇴직 후 IRP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IRP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지 역시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k_1$ 을 퇴직연금 선택 근로자의 IRP 유지확률,  $k_2$ 를 퇴직금 선택 근로자의 IRP 전환확률이라고 한다면, 2기의 IRP 선택모형은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RP = k_1 \cdot \text{퇴직연금} + k_2 \cdot \text{퇴직금} \quad \text{where } k_1 \geq \bar{k} \text{ and } k_2 \geq \bar{k}, \quad (2)$$

이제 정부는 정책을 활용하여 IRP 최소유지확률을  $\bar{k}$ 로 설정하고자 한다. 즉, 정책을 통해  $k_1 \geq \bar{k}$ 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IRP와 관련된 정부정책은 퇴직연금이 IRP로 자동 전환되도록 규제하는 것이며, 이 정책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IRP를 통해 계속적으로 적립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퇴직연금이 IRP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였으나, 동시에 해지에 자유를 줌으로써 정부정책으로 인한  $\bar{k}$ 는 0에 근접하므로,  $k_1$ 의 한계선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현재의 IRP 시장 상황을 보면, 퇴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의 대다수가 IRP를 해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k_1$ 이 0에 수렴하게 되며,  $k_2$ 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기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k_2 = 0$ 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본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의식은 정부는  $k_1$ 을 높이기 위해서  $k_1$ 에 영향을 미치는  $\bar{k}$ 에 관한 정책을 도입했는데, 현재 정부의  $\bar{k}$ 가 너무 낮기 때문에 IRP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_2$ 는 정부정책의 규제가 없으므로  $\bar{k}$ 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결국 모형에서  $\bar{k}$ 가 커지면 퇴직금 중 IRP로 유입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가 의도

하는 정책방향은  $\bar{k}$ 를 증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bar{k}$ 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처럼 근로자가 IRP 유지나 해지의 양자택일적인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거나, 또는 해지 시 일정 비율의 추징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에서 IRP가 유지될 확률은  $\bar{k}$ 의 함수로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k_1 = f(\text{개인 변수, 퇴직연금액, 노후소득보장중요도, } \bar{k}) \quad (3)$$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모형은 퇴직급여의 수령액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퇴직급여 극대화는 현재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미래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두 제도에 대한 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현재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업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미래소득의 퇴직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중도 소진되지 않도록 IRP의 유지확률이 높아져야 한다. 이는 식 (4)와 같이 표현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 효용극대화 문제에 따라  $k_1$ ,  $k_2$ ,  $\alpha$ 를 선택하게 된다.

$$\begin{aligned} &\text{choose } k_1, \bar{\alpha} \text{ such that} \\ &\max \text{ 퇴직급여}_t = \bar{\alpha} \cdot \text{퇴직연금}_t + (1 + \bar{\alpha}) \cdot \text{퇴직금}_t \\ &s.t. \text{ IRP}_{t+1} = k_1 \cdot \text{퇴직연금}_{t+1} + k_2 \cdot \text{퇴직금}_{t+1} \\ &k_1 \geq \bar{k}_1, k_2 \geq \bar{k}_2 \end{aligned} \quad (4)$$

현재의 IRP 제도 구조상  $\bar{k}$ 가 증가하면, 현재소득을 중시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으로의 이동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bar{k}$ 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즉, 근로자가 현재소득을 선호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위 모형을 풀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최적해(最適解)는  $k_1 \rightarrow 0$ ,  $k_2 = 0$ ,  $\alpha > 0$ 을 선택하게 된다.

퇴직급여 대상자가 현재소득(퇴직금)을 미래소득(퇴직연금)보다 선호한다는 가정은 퇴직급여 자산의 특성에 기인한다.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 선호에 따라 현재소득과 미

래소득을 배분하는 이유는 이자와 같은 현재자원의 미래자원에 대한 시간 프리미엄 때문이다. 퇴직급여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과 달리, 적립 시점에 자산의 증가가 결정되고 수령 시점에는 자산이 확정되어 시간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선택에 따른 세제 효과가 남게 된다. 퇴직금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또한, 퇴직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 따라 차등 공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한 번 추가공제한 후 연분연승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가 퇴직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세창(2012)에 따르면 퇴직급여 수령과 관련된 세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기간이 짧아질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이 유리한 체계로 되어 있다. 다만 시장 프리미엄과 세제의 효과만 고려하면,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퇴직소득액, 업종 등)에 기인한 퇴직급여의 선호체계가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시장 프리미엄만 고려한다면, IRP 유지확률인  $k_1$ 이 장기적으로 0이 되겠지만,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모형에서는 단기적으로  $k_1$ 이 0에 근사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은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이론적인 분석보다는 자료를 통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k_1$ 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해 실증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한편 정부의 의사결정 모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있다. OECD(2013)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27년임을 감안할 때, 실질 소득대체율은 2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적연금 확대 등 정부의 또 다른 사회보장 예산의 투입을 불가피하게 한다. 정부 입장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퇴직급여가 노후소득으로 사용 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퇴직급여의 IRP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중도 소진하지 않고 노후소득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인  $\bar{k}$ 의 선택은 식 (5)와 같은 IRP 유지의 극대화 문제를 따르게 된다.<sup>4)</sup>

4) 근로자의 근로기간 내 급여(현재)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정



$$\begin{aligned}
 & \text{choose } \bar{k} \quad \text{such that} \\
 & \max IRP_t = k_1 \cdot \text{퇴직연금}_t + k_2 \cdot \text{퇴직금}_t \\
 & s.t. \text{ 퇴직급여}_t = \alpha \cdot \text{퇴직연금}_t + (1 - \alpha) \cdot \text{퇴직금}_t \quad (5) \\
 & k_1 \geq \bar{k}, \quad t = 1 \text{ or } 2
 \end{aligned}$$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위 모형에서 IRP 규모를 극대화하는  $\bar{k}$ 는, 퇴직연금이 극대화되는  $\alpha = 1$ 일 때 달성된다. 즉, 정부의 최적 결과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근로자 선택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IRP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bar{k}$ 를 설정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bar{k}$ 는 결국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 자동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정부의 최적 선택은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로 자동 이전이 되게 함으로써, 이전에  $\bar{k}$ 에 영향을 받지 않는  $k_2$ 를  $k_2 \geq \bar{k}$ 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퇴직급여의 선택과 IRP의 유지는  $\bar{k}$ 에 따라 결정되며, 식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choose } \bar{k} \quad \text{such that} \\
 & \max \text{퇴직급여} = k'_1 \cdot \text{퇴직연금}(\bar{k}) + k''_2 \cdot \text{퇴직금}(\bar{k}) \quad (6) \\
 & s.t. \quad k_1 \geq \bar{k}, \quad k_2 \geq \bar{k}
 \end{aligned}$$

결국 퇴직금을 퇴직연금과 같이 IRP로 자동 이전하게 되면,  $k'_1$ 과  $k''_2$ 의 변화에 따라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비율에 조정과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부의 합리적 선택인 퇴직급여의 단일화와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

부는 최저임금제, 임금체불 규제 등의 소극적 정책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간 후 (미래) 퇴직급여는 고령화와 노후소득의 미비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정부의 정책측면에서 근로생애기간의 효용극대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의 소득과 근로 후 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간 후 급여에 대한 부분분석(partial analysis)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정부의 목적함수는 근로자의 미래소득 극대화에 있다.

### Ⅲ. IRP 가입자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IRP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 중 한 금융기업의 IRP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치를 추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IRP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가입자로 표본 수는 5,959명이다. 퇴직연금가입자 자료에서는 가입자의 연령, 성별, IRP 계좌 입금액, 가입 일 및 해지일, 계약유지 상태, 이전직장의 업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도입 현황에 따르면 분석기간에 해당하는 시점인 2012년도 12월 말 우리나라 전체 IRP 가입자 수는 1,060,166명이며, 적립금은 5조 27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IRP 가입자에 대한 통계는 분기별 특정 시점의 규모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입 시점과 해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 신규 가입규모와 해지규모를 추정할 수 가 없다. 따라서 신규 가입규모와 해지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 퇴직연금사업자에서 관리하는 가입자 자료가 필요하다.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데이터를 연구자가 획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수위에 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IRP 시장 상황에 대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표 1>에서 IRP 계좌 입금액 분포를 보면, 평균적으로 1,250만 원의 입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 계층의 입금액 규모와 하위 계층의 입금액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값을 파악하면 435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90%가 2,000만 원 미만의 입금액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자의 75%는 입금액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1억 원 이상 가입자는 14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대상은 2012년 7월에서 2013년 8월에 신규 계약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분석 시점은 표본대상자 중 마지막으로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 분석 시점에서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모두 180일 이상 IRP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표본대상의 가입 유지기간을 산정할 때, 7일 이하, 7~30일, 30~90일, 90~180일, 180일 이상으로 하였다. <표 2>는 계약 시점별 가입자 수와 각 가입자의 현재 IRP 계좌유지 상태를 보여준다.

<표 1> IRP 가입자의 입금액 분포

입금액 분포	백분위별 입금액(원)
하위 1%	1,012,881
하위 5%	1,600,370
하위 10%	1,803,050
하위 25%	2,426,771
하위 50%	4,352,644
하위 75%	8,244,519
하위 90%	19,100,000
하위 95%	41,700,000
하위 99%	169,000,000
평균	12,500,000
표준편차	39,500,000

<표 2> 계약 시점별 가입자 수 및 IRP 계좌유지 상태

계약 시점	신규 가입자	계좌유지	해약
2012년 07	6	6	0
2012년 08	511	41	470
2012년 09	757	68	689
2012년 10	932	80	852
2012년 11	926	70	856
2012년 12	871	119	752
2013년 01	964	136	828
2013년 02	992	179	813
전 체	5959	699	5260

<표 3>의 IRP 가입 유지기간을 보면, 가입 후 7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전체 3,68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2%를 차지하였고, 1개월 이내 해지율은 82%에 달하였다. 즉, 은퇴 전 퇴직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IRP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실제 대부분의 근로자는 IRP계좌를 퇴직 즉시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6개월 이상 계좌를 유지하는 근로자는 699명으로 전체가입자의 12% 이내에 머물렀다. 한편 연령구간으로 가입자 수를

〈표 3〉 연령 구간별 IRP 가입 유지기간

(단위: 명)

연령 구간	IRP 가입 유지기간					전 체
	7일 이내	7~30일 이내	30~90일 이내	90~180일 이내	180일 이상	
30세 미만	799	375	75	11	165	1,425
30~40세미만	1,295	445	120	20	233	2,113
40~50세미만	959	253	68	11	177	1,468
50~60세미만	583	142	35	5	109	874
60세 이상	47	11	6	0	15	79
전 체	3,683	1,226	304	47	699	5,959

살펴보면 30~40세가 전체 가입자의 35.5%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60세 이상이 1.3%로 가장 적은 가입 비중을 보였다. 연령별 유지기간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60세 미만 가입자가 7일 이내에 해지하는 비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이상 보유하는 비중은 60세 이상이 18.9%로 가장 높았다. 50세 이상~60세 미만의 연령에서 초기 해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생애주기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된다. 전반적으로 가입자의 가입유지 성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해지하거나,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IRP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다. 미국의 IRA의 경우 우리나라의 IRP처럼 계좌 해지의 개념보다는 인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IRA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의 해지보다는 가입자의 효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기 때문이다. 미국자산운용협회인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 따르면 2014년에 미국의 기본형 IRA 가입자 중 전체 20%만이 중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에서 80% 이상이 즉시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ICI(2015)의 조사결과, 2014년 미국의 IRA 중도 인출 사유는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주택 이외에 자동차, 선박 등 값비싼 상품의 구매로 인한 인출이 9%, 의료비 22%, 긴급자금 12%, 주택의 구입·수리·리모델링 22%, 재투자 및 타 계좌로의 저축 38%, 교육비 6%, 기타 목적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출 연령대를 살펴보면, 59세 이하에서 인출한 경우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9~69세에서 인출한 비중은 20%, 70세 이상에서 인출한 비중은 67%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 고령층에서 IRA를 인출하며, 젊은 층의 인출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출 규모의 중앙값은 계좌 잔액의 8% 수준으로 실제로 총액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

퇴직자의 계좌인출 사유가 우리나라와 미국이 유사하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IRA 유지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IRP의 해지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IRP의 높은 해지율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IRP 가입과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결정 범위는 미국의 IRA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이직과 퇴직 시 IRP 계좌로의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이다. 미국의 IRA 가입자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인출(Cash-out), 기존의 퇴직연금플랜 유지(Remain in plan), IRA로 롤오버(Rollover)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IRP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가입자는 IRP 가입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만약 미국의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인출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과세이연이 불가능하고 인출금액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퇴직자가 59.5세 미만이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퇴직자가 과세이연을 포기하고 가산세 납부를 감수하고자라도 인출의 효용이 크다면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수행하면 된다.

미국에서 퇴직 후 기존의 퇴직연금플랜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전직장에서 사용하던 퇴직연금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적립된 금액에 대해 계속 과세를 이연해 주며, 수동적인 가입자의 경우 수급 시점까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적극적인 가입자의 경우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여 은퇴자산을 축적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롤오버는 401(K), 401(b), 457 등의 DC형 퇴직연금이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직이나 퇴직 시에 IRA 계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퇴직 후 퇴직연금적립금을 IRP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미국의 롤오버의 경우 가입자 선택의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큰 차이로 하겠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가입자의 경우 미국의 IRA와 다르게 IRP 이전에 대한 개인의 효용을 고려할 수 없는 구조이다. 결국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IRP 가입

이 아닌, IRP 유지와 해지에 관한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IRP 가입에 근로자가 본인의 효용을 고려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IRP가 높은 해지율을 보이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사항은 IRP 적립금의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이다. 2014년 미국의 IRA 중도 인출의 가장 큰 사유로 퇴직 후의 생활비, 긴급자금, 의료비가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IRA의 주요 인출 사유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IRA의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근로자 선택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미국의 IRA는 59.5세 미만의 가입자가 중도 인출을 한다면 중도 인출 금액 중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반면 59.5세 이상 70.5세 미만은 가산세 없이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한편 70.5세 이상은 기대수명에 기초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인출요구액: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을 매년 인출해야 하며, RMD를 마감일 전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RMD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미국의 경우 IRA 인출에 대해서 근로자의 효용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되, 기본적으로 젊은 시기에는 IRA의 인출을 지양하게 하고 노후에는 은퇴자금 인출을 유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IRP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IRP 계좌 해지라는 극단적인 방법만 있을 뿐이며, 연령에 따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노후에 IRP 자금을 적극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유인책도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가입자 특성별 임금액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임금액 평균은 남성이 여성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60세 미만 가입자의 평균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입 유지기간별로 보면 180일 이상 가입자의 임금액이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이와 상반되게 7일 이내 해지하는 가입자의 임금액 평균도 타 구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임금액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금융업이 그 뒤를 이었다.

<표 5>에서 IRP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규모를 보면, 1,000만 원 미만이 4,728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였다. 임금액 구간은 전체 가입자의 임금액 분포를 고려하여 7개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전체적으로 60세 이전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IRP 입금액이 증가하여 50~60세 미만 구간에서 1,000만 원 미만 입금자가 71.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60세 이후에는 1,0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60세

〈표 4〉 가입자 특성별 기초통계량

		입금액(단위: 원)		
		빈도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성	3,044	18,346,949	53,063,809
	여성	2,915	6,326,517	12,975,553
연령구간별	30세 미만	1,425	4,331,232	3,746,201
	30이상~40세 미만	2,113	9,523,655	15,389,910
	40이상~50세 미만	1,468	15,480,438	35,404,248
	50이상~60세 미만	874	27,187,582	84,135,026
	60세 이상	79	19,078,375	73,082,670
가입유지기간별	7일 이내	3,683	12,189,923	31,527,005
	7일 이상~30일 이내	1,226	9,059,787	29,632,611
	30일 이상~90일 이내	304	6,075,712	12,670,235
	90일 이상~180일 이내	47	8,034,075	15,984,888
	180일 이상	699	22,979,269	79,154,379
업종별	건설업	104	22,717,226	104,889,977
	국방/행정/사회/문화	366	7,100,059	17,394,965
	금융사업/서비스업	2,642	11,856,033	42,537,862
	도소매/숙박/요식업	1,538	7,908,230	18,605,636
	운수/창고/통신업	265	5,481,858	10,120,761
	제조업	1,044	22,743,971	48,254,500

〈표 5〉 연령 구간별 입금액

(단위: 명)

입금액 구간	연령 구간					전 체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250만원 미만	519	411	378	266	22	1,596
250만~500만원	533	610	389	172	28	1,732
500만~1,000만원	290	572	331	188	19	1,400
1,000만~2,000만원	76	324	165	102	3	670
2,000만~5,000만원	6	147	102	45	3	303
5,000만~1억원	1	34	43	36	1	115
1억원 이상	0	15	60	65	3	143
전 체	1,425	2,113	1,468	874	79	5,959

이상은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다음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 6>에서 입금 구간별 가입 유지기간을 보면 1,000만 원~2,000만 원 구간의 경우 7일 이내 해지하는 비율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80일 이상 IRP 계좌를 유지하는 비율은 1억 원 이상에서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입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액이 증가할수록 가입자가 IRP 계좌를 유지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7일 이내에 IRP를 해지하는 비중이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소매/숙박/요식업에서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7일 이내 IRP를 해지하는 경우는 43.6%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국방/행정/사회/문화 종사자의 6개월 이상 IRP 유지 비율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80일 이상 보유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5.76%의 유지 비율을 보였다(표 7).

<표 6> 입금액 구간별 IRP 가입 유지기간

(단위: 명)

입금액 구간	IRP 가입 유지기간					
	7일 이내	7~30일 이내	30~90일 이내	90~180일 이내	180일 이상	전 체
250만원 미만	895	365	115	18	203	1,596
250만~500만원	1,032	430	93	14	163	1,732
500만~1,000만원	899	284	62	8	147	1,400
1,000만~2,000만원	491	89	22	3	65	670
2,000만원 이상	208	28	9	3	55	303
5,000만~1억원	78	10	1	1	25	115
1억원 이상	80	20	2	0	41	143
전 체	3,683	1,226	304	47	699	5,959



〈표 7〉 업종별 IRP 가입 유지기간

(단위: 명)

업 종	IRP 가입 유지기간					전 체
	7일 이내	7~30일 이내	30~90일 이내	90~180일 이내	180일 이상	
건설업	79	14	4	1	6	104
국방/행정/사회/문화	238	57	10	1	60	366
금융사업/서비스업	1,817	479	85	18	243	2,642
도소매/숙박/요식업	670	504	146	22	196	1,538
운수/창고/통신업	167	39	21	2	36	265
제조업	712	133	38	3	158	1,044
전 체	3,683	1,226	304	47	699	5,959

〈표 8〉 성별 IRP 입금액과 가입 유지기간

(단위: 명)

		성 별		
		남성	여성	전 체
입금액 구간	250만원 미만	615	981	1596
	250만~500만원	799	933	1732
	500만~1,000만원	745	655	1400
	1,000만~2,000만원	418	252	670
	2,000만원 이상	243	60	303
	5,000만~1억원	95	20	115
	1억원 이상	129	14	143
	전 체	3,044	2,915	5,959
가입 유지기간	7일 이내	1,995	1,688	3,683
	7~30일 이내	530	696	1,226
	30~90일 이내	115	189	304
	90~180일 이내	23	24	47
	180일 이상	381	318	699
	전 체	3,044	2,915	5,959

<표 8>에서 성별로 구분하여 남성과 여성의 IRP 계좌 입금액 차이를 살펴보면, 1,000만 원 미만 입금액은 남성이 70.9%, 여성이 88.1%의 비중을 보였으며, 2,000만 원 이상 입금액은 남성이 15.3%, 여성이 3.2%로 전체적으로 남성의 입금액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 IRP 가입 유지기간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일 이내에 해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7일 이내 해지하는 비중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비중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분석대상인 1개월 이내 해지자와 6개월 이상 유지자의 두 그룹 간의 속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개월 이내의 해지자와 6개월 이상 유지자의 속성을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6개월 이상 유지한 가입자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여성의 비중보다 10%가량 높게 나타났으나, 1개월 이내 해지자는 남성과 여성 간 비중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평균은 6개월 이상 유지자가 해지자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 구간 모두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보다 1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개월 이상 유지자는 1개월 이내 해지자보다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금액의 평균은 6개월 이상 유지자와 1개월 이내 해지자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유지자의 입금액 평균이 1개월 이내 해지자의 입금액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의 경우 분류된 모든 업종에서 1개월 이내 해지자의 수가 유지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1개월 이내 해지자가 6개월 이상 유지자보다 15배가량 높게 나타나 비중이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국방/행정/사회/문화의 경우 1개월 이내 해지자가 6개월 이상 유지자보다 4.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적은 비중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RP를 180일 이상 유지하는 비중은 50대 가입자에서 12.4%, 60대 이상 가입자에서 18.9%의 비중을 보여 다른 연령대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타 연령대보다 IRP 유지율이 높은 중고령층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고령층에서 IRP를 유지하는 가입자와 해지하는 가입자의 입금액 수준, 업종, 성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10>에서 보면, 중고령층에서 IRP를 해지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IRP를 유지하는 경우는 남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층 IRP 유지자의 입금액 평균은 IRP 해지자의 입금액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한 중

고령 근로자 중 IRP를 해지하는 가입자는 92.9%에 달했으나, 국방/행정/사회/문화 업종에 종사한 중고령 근로자 중 IRP를 해지하는 가입자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층에서는 IRP의 해지와 유지에 업종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1개월 이내 해지자와 6개월 이상 유지자의 속성 비교

		1개월 이내 해지자	6개월 이상 유지자
성별(단위: 명)	남성	2,525	381
	여성	2,384	318
연령구간별(단위: 명)	평균	37.73	38.37
	30세 미만	1,174	165
	30세 이상~40세 미만	1,740	233
	40세 이상~50세 미만	1,212	177
	50세 이상~60세 미만	725	109
	60세 이상	58	15
입금액(단위: 원)	평균	11,408,186	22,979,269
	표준편차	31,091,281	79,154,379
업종별(단위: 명)	건설업	93	6
	국방/행정/사회/문화	295	60
	금융사업/서비스업	2,296	243
	도소매/숙박/요식업	1,174	196
	운수/창고/통신업	206	36
	제조업	845	158

〈표 10〉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IRP 유지자와 해지자의 속성 비교

		50대 이상 가입자 중 해지자	50대 이상 가입자 중 유지자
성별(단위: 명)	남성	406	87
	여성	423	37
입금액(단위: 원)	평균	20,495,168	66,763,259
	표준편차	58,140,073	170,396,518
업종별(단위: 명)	건설업	10	3
	국방/행정/사회/문화	6	14
	금융사업/서비스업	559	43
	도소매/숙박/요식업	121	19
	운수/창고/통신업	36	10
	제조업	95	34

## IV. 실증분석

제III장에서 IRP 현황의 기초통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제II장에서 제시한 이론 모형과 같이 실제로 대부분의 퇴직연금가입자가 장기적으로 IRP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II장 이론모형에 따라  $k_1$ 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IRP 유지기간은 단기적으로 볼 때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특성 변수를 바탕으로 IRP 가입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이전된 후 IRP 계좌의 즉시 해지와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IRP 가입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는 IRP 가입일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는 설명변수로는 연령, 로그입금액, 성별, 업종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epsilon$$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일수가 길어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IRP 계좌의 입금액이 클수록 가입일이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11〉 IPR 가입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변수명	계수	표준오차
연령	0.3538***	0.116
로그입금액	-3.0178***	1.098
성별	3.8571	2.358
국방/행정/사회/문화	19.4311**	9.191
금융사업/서비스업	4.0896	8.039
도소매/숙박/요식업	22.7184***	8.175
운수/창고/통신업	12.8147	9.498
제조업	19.5250**	8.297
상수항	57.7747***	18.342
관측치	5,959	

주: 1) \* = 10%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업종은 건설업을 기준변수로 함.

건설업을 비교할 때 제조업과 국방/행정/사회/문화, 도소매/숙박/요식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 IRP의 가입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RP 계좌의 즉시 해지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로짓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산형일 경우에 사용하며, 표본 특성을 반영하는 오차항이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로짓 모형의 분포함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모형의 가정을 충족하는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다.

$$\ln\left(\frac{p_i}{1-p_i}\right) = \alpha + \beta_1x_1 + \beta_2x_2 + \beta_3x_3 + \beta_4x_4 + \epsilon$$

먼저 IRP 계좌의 즉시 해지에 미치는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퇴직급여의 IRP계좌 이전 후 7일 이내 해지 시 1, 유지 시 0으로 하는 이항변수로 구성하였고, 설명변수는 연령, 로그입금액, 성별, 업종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IRP 계좌 입금액이 클수록, 남성인 경우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업을 기준으로 할 때 도소매/숙박/요식업의 IRP 해지 확률이

<표 12> 즉시 해지(일주일 이내)하는 가입자의 특성 분석

변수 명	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연령	0.0079***	0.0029	0.0019
로그입금액	0.1285***	0.0278	0.0301
성별	0.2560***	0.0576	0.0601
국방/행정/사회/문화	-0.208	0.2401	-0.0498
금융사업/서비스업	-0.1502	0.2144	-0.0353
도소매/숙박/요식업	-1.1825***	0.2164	-0.2841
운수/창고/통신업	-0.3721	0.2462	-0.0902
제조업	-0.314	0.2204	-0.0752
상수항	-1.4543***	0.4688	-
관측치	5,959		

주: 1) \* = 10%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업종은 건설업을 기준변수로 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해지 기준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가정할 경우의 가입자 특성을 분석하면 <표 13>과 같다. 분석 결과, 1개월 이내를 즉시 해지 기준으로 보면 연령의 높을수록 IRP를 즉시 해지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시 해지 기준을 7일 이내로 가정한 경우와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성별은 7일 이내 기준과 다르게 더 이상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입금액의 경우 7일 이내 기준과 유사하게 클수록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6개월 이상 IRP 계좌를 장기로 유지하는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유지 시 1, 해지 시 0으로 하는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를 설정하였고, 설명변수는 즉시 해지 시 사용한 변수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가 IRP 계좌를 장기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업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국방/행정/사회/문화, 도소매/숙박/요식업, 운수/창고/통신업, 제조업의 경우가 IRP 장기유지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1개월 이내 해지자의 가입자 특성 분석

변수 명	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연령	-0.00900**	0.0036	-0.0013
로그입금액	0.0873**	0.0339	0.0124
성별	-0.0402	0.0722	-0.0057
국방/행정/사회/문화	-0.704**	0.350	-0.1203
금융사업/서비스업	-0.204	0.326	-0.0291
도소매/숙박/요식업	-0.968***	0.327	-0.1586
운수/창고/통신업	-0.841**	0.353	-0.1495
제조업	-0.769**	0.330	-0.1271
상수항	1.187*	0.625	-
관측치		5,959	

주: 1) \* = 10%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업종은 건설업을 기준변수로 함.

〈표 14〉 6개월 이상 장기 유지하는 가입자의 특성분석

변수 명	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연령	0.0118***	0.0042	0.0012
로그입금액	-0.0051	0.0393	-0.0005
성별	0.1553*	0.0859	0.0157
국방/행정/사회/문화	0.9447***	0.3647	0.1299
금융사업/서비스업	0.1901	0.3387	0.0194
도소매/숙박/요식업	0.6128*	0.3411	0.0696
운수/창고/통신업	0.6462*	0.3776	0.0815
제조업	0.7775*	0.3427	0.0955
상수항	-2.9580***	0.6797	-
관측치		5,959	

주: 1) \* = 10%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업종은 건설업을 기준변수로 함.

분석 결과를 볼 때 주목할 점은, 7일 이내 즉시 해지하는 확률과,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는 확률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크다는 점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 즉시 해지할 확률과 장기 보유할 확률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RP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클수록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IRP 계좌의 장기 유지와 관련해서는 입금액 규모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IRP 계좌의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및 가입자의 입금액 규모 등 서로 다른 타깃층에 따라 제도적 다양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IRP의 가입일수가 길어지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IRP를 즉시 해지할 확률도 높고 장기 유지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IRP 선택과 유지에 대한 연령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즉시 해지와 장기 유지의 연령효과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연령제곱의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7일 이내 즉시 해지 시의 연령제곱변수의 회귀계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즉시 해지할 확률을 증가시키다가 일정 연령 이상부터는 즉시 해지 확률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반영하여 부(-)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즉시 해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을 넘어서면 오히려 IRP를 유지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5〉 IRP 즉시 해지와 장기 유지의 연령효과 분석

변수 명	7일 이내 해지			6개월 이상 유지		
	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연령	0.0648***	0.0208	0.0152	-0.0287	0.0294	-0.0029
연령2	-0.000715***	0.000259	-0.0002	0.000502	0.000359	0.0001
로그임금액	0.119***	0.0280	0.0279	-0.000288	0.0399	0.0000
성별	-0.258***	0.0578	-0.0605	-0.156*	0.0860	-0.0157
국방/행정/사회/문화	-0.266	0.259	-0.0641	1.307***	0.449	0.1983
금융사업/서비스업	-0.193	0.236	-0.0455	0.543	0.428	0.0561
도소매/숙박/요식업	-1.236***	0.238	-0.2965	0.970**	0.430	0.1174
운수/창고/통신업	-0.425	0.265	-0.1033	1.003**	0.459	0.1410
제조업	-0.360	0.242	-0.0864	1.133***	0.431	0.1507
상수항	-1.801***	0.599	-	-2.315***	0.896	-
관측치	5,959					

주: 1) \* = 10%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업종은 건설업을 기준변수로 함.

##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접근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IRP 현황과 가입자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IRP 유지와 해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IRP의 도입 취지는 이직 시에도 퇴직급여를 소진하지 않고, 최종 은퇴 시점까지 계속해서 퇴직급여를 적립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함이다. 특히 퇴직연금 적용 근로자에 한해, 퇴직 후 자동으로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하여, 의도적으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퇴직연금을 최종 은퇴 시까지 계속해서 적립할 수 있도록 일종의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걸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것과 같이 퇴직으로 인해 자동으로 IRP에 가입된 가입자의 82%가 한 달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퇴직급여와 IRP 선택의 경제모형을 볼 때,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직접적인 단일화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논리로 인해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직금을 IRP로 자동 이전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과 규모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인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는 것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도 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014년 미국의 IRA 중도 인출의 가장 큰 사유로 퇴직 후의 생활비, 긴급자금, 의료비가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퇴직 후 연금 수급기간 전까지 소득이 없는 계층에서 IRP 자금의 활용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후자금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중도 인출에 대해 연령별로 서로 다른 유인체계를 구성하여 최소한 노후자금의 연속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59.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IRA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액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의 인출을 지양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59세 미만의 퇴직자의 경우 6%만이 IRP 계좌를 중도 인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자금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지율이 높아지나, 연령제곱의 회귀계수를 보면 특정 연령시점을 지난 이후에는 오히려 해지할 확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중고령층의 퇴직 후 연금수급 전까지의 소득공백 시점에서 가장 높은 해지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중도 인출 시 인출 금액에 대해

몇 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금의 탄력성에 대한 연구와 세법 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젊은 층의 경우 인출된 IRP 금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고,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소득공백기에 인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만 부과하는 중도인출을 허용한다면, IRP 가입자의 극단적인 계좌 해지를 일정 부분 완화하여 퇴직연금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IRP 일부 금액의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조건부 중도 인출 조건을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의료비, 긴급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는 IRP 적립금의 30%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IRP 가입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부 자금을 대한 중도 인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IRP의 전액 중도해지를 방지하여 IRP 계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IRP의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초기 IRP 가입 시 가입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IRA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두 가지로 나뉘어져,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raditional IRA는 현재 소득세를 절약을 선호하는 경우, Roth IRA는 은퇴 시점에 내야 하는 소득세를 선호할 경우 선택된다. 2014년 기준으로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1년에 \$5,500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Traditional IRA는 납입한 금액만큼 세금신고 시 소득을 공제받고, 은퇴 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Roth IRA는 세금 보고 시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은퇴 후 연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높은 소득세가 적용된다면, Traditional IRA에 투자해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계획이거나, 연금 외 부동산 등 다른 수입 재원을 확보한 경우 Roth IRA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입자의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로 고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IRP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 연령대에서 IRP 해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그 중 50~60세의 해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IRP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세제혜택이라 볼 수 있다.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2014년 400만 원에서 2015년 70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 확대된 300만 원은 모두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이라는 점에서 IRP의 경제적 유인책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은 전체 IRP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 연령대의 IRP 유지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 도입이 아직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IRP 도입은 3년이 채 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다수의 베이비부머 중고령층의 경우 장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IRP 활용을 통한 노후자금의 추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은퇴 준비가 시급한 중고령층에게 추가 기여분의 한도액을 증가시켜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다면, 현재 해지율이 가장 높은 50대에서 IRP를 유지에 대한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50대 미만의 IRA 가입자에게는 \$5,500의 추가 기여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나, 캐치업 플랜(Catch-Up Plan)을 통해 50대 이상 IRA 가입자에게는 \$6,500의 추가적 기여에 대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중고령층의 IRA의 지속적 보유에 대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류건식·김대환. 「개인형 퇴직연금 잠재가입자의 인식 및 니즈 분석」. 『사회보장연구』 28권 1호(2012. 2): 129-161. (a)
- \_\_\_\_\_.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안」. 『KIRI Weekly』 194호 (2012. 8): 1-9. (b)
- 박원주·임두빈·전용일.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의 특성분석」. 『연금연구』 1권 2호 (2011. 12): 29-58.
- 오진호·임두빈·전용일.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전망」. 『연금연구』 3권 1호 (2013. 6): 65-81.
- 이태호·신성환. 「개인형퇴직연금 도입효과 및 활성화 방안」. 노동부 연구보고서 (2009. 11).
- 임두빈·전용일.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관한 기업의 결정요인 분석」. 『연금연구』 2권 1호 (2012. 6): 27-56.
- 정세창. 「퇴직급여 현황과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2): 1168.

- 정유석.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세제 개편방안 연구」. 『국제회계연구』 48권 (2013. 4): 287-310.
- Attanasio, P. Orazio and Thomas DeLeire. “The Effect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National Saving.” *The Economic Journal* 112 (481) (July 2002): 504-538.
- Benartzi, Shlomo and Richard H. Thaler. “Naive Diversification Strategies in Defined Contribution Savings Plan.”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March 2001): 79-98.
- Burtless, Gary. “What Do We Know about the Risk of Individual Account Pensions? Evidence from Industrial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93 (2) (January 2003): 354-359.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165.
- Papke, E. Leslie. “How are Participants Investing Their Accounts in Participant Directed Individual Account Pension Plans?” *American Economic Review* 88 (2) (May 1998): 212-216.
- \_\_\_\_\_. “Individual Financial Decisions in Retirement Saving Plans: The role of participant-dire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2) (January 2004): 39-61.
- Shankar, S. Gowri and James M. Miller. “Retirement Plan Choices and Outcomes.” *Business Horizons* 46 (4) (July 2003): 53-60.

abstract

---

## The Persistent Effects of Retirement Pension Reserves -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RP Program

Doobin Yim · Yongil Jeon

The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enables workers to continuously receive a retirement pension even when workers change their jobs in different companies and so it performs a bridge fund as the complimentary living expenses until they receive government public pension.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ced workers to maintain an IRP account until their retirement age and to close their accounts only when they want to do so, it is not clear to measure its really effectiveness and, in fact, most of IRP accounts have been terminated immediately after the changes of their jobs. In this respect, IRP has not performed the bridge role for the future retirement pension income.

We provide an economic decision-making model of both government and workers, where the retirement benefits related with the IRP are explicitly considered. Our model is required to select specific severance pay systems to maximize the income security and stability for their future old ages. It is concluded that the need of workers on the severance pay system is automatically revealed into the switch to IRP when workers are out from their current jobs, which is equivalent to the effect of gradually unifying the dual system of the retirement payment. In additoin, our empirical data indicates the relatively higher probability of termination on IRP for the older male workers having the more retirement deposit.

Keywords : retirement age, wage peak system, defined benefit pensio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